#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안

의안 번호

제 출 일 : 2024. 3.
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## 1. 제안이유

○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의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『지방재정법』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## 2. 관계법령

○ 『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13조

제13조(운영재원)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○ 『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』 제5조 및 제6조

제5조(기금) ① 연구원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남양주시정연구원육성기금(이하 "기금" 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제6조(재산운영 및 관리)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 및 보조금, 기금의 과실금(이자 수입),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
## 3. 주요내용

○ 신규 출연금 : 금276,610,000원

구 분	예산액(천원)	내 용
총 액	276,610	
기본재산	200,000	- 기본재산 (설립 자본금)
시정연구원 운영	76,610	- 원장 및 직원 급여, 출장여비, 업무추진비 등 (2개월분)

## 4. 참고사항

○ 설립 개요

- 연구원명: 남양주시정연구원

- 개원시기 : 2025년 1월

- 설립부지 : 남양주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임차 예정

- 조 직 : 3실 / 21명 (원장 1, 실장 1, 행정 6, 박사 연구원 11, 연구보조 2) \*\*개원 초기. 채용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연구실 및 연구인력 유동적 구성 가능

- 예 산 : 설립 준비 - 11억 7,300만원 (24 1추경예산) / 연간 운영 - 26억 (25 본예산) \*\*24. 1회추경 11억 7,300만원 중, 2억 7,661만원을 출연하고 8억 9,639만원은 자체 편성

#### ○ 설립 배경

-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※ 설립 기준 법률 개정(2022. 10. 27.): 인구 100만 이상 → 50만 이상
- '인구 100만 특례시' 및 '첨단자족도시' 조성 목표의 달성을 위해 시 규모에 맞는 연구 역량 및 경쟁력 확보를 견인하는 시정연구원 설립 필요

#### ○ 설립 목적

구 분	세 부 내 용	
통합적 시정연구	<ul><li>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로 시정 전반에 대한 검토・진단</li><li>■ 대규모 정책사업의 실효성 및 필요성, 효과성 등 논리를 뒷받침</li></ul>	
지역 실정에 맞는	<ul> <li>■ 지역 실정에 맞는 연구 수행을 통해 중장기 발전 계획과 지역</li></ul>	
연구 수행	경쟁력 강화 비전을 제시 <li>■ 지리・사회・경제・산업 여건과 주변 인프라 등에 따른 특화 연구 진행</li>	
긴급 현안에 대한	<ul> <li>■ 지속적인 시정 연구로 지역 현황에 대한 DB 구축 및 합리적인</li></ul>	
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	행정지원 체계 구축 <li>■ 인구 증가 등 점증하는 행정수요 및 긴급 현안 사항 대응</li>	

#### ○ 향후 계획

- 2024. 4. : 설립 준비 예산 확보 (1회 추경)

- 2024. 4. : 이사회 구성 및 운영

- 2024. 6. : 행정안전부 설립 허가 신청

- 2025. 1. : 시정연구원 개원